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51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4나9340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

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9692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

48737 판결 등 참조).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공동피고 1은 2021. 12. 23. 자신의 고모인 제1심공동피고 2와 사이에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8. 제1심공동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제1심공동피고 1은 2021. 12. 23. 피고와 사이에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아울러 제1심공동피고 1은 2021. 12. 27. 피고와 사이에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제1심공동피고 1은 2021. 12. 23. 피고와 사이에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제1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위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자신의 거래처인 소외인에게 98,920,000원, 피고에게 45,700,00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6) 원고는 2023.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그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제1심공동피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마쳐져 있다.

7) 원고는 2025. 9. 9. 원심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제1심공동피고 1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고모 제1심공동피고 2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제1심공동피고 1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7. 21. 무렵에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제1심공동피고 1이 채무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와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위 2023. 7. 21. 무렵으로부터 1년이 지나 2025. 9. 9. 청구취지에 추가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 추가된 청구 부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청구 부분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